

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공사확대 추진

공정위,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(안) 입법예고

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(안)이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(기간 : 9월 26일~10월 17일)되었다. 이밖에도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근거조항 마련 등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.

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·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·공포되며 금년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 [편집자 주]

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(안) 주요 내용

1. 대규모 내부거래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범위 확대

• 주요 내용

① 대규모 내부거래

- 이사회의 사전 의결 및 공시 대상이 되는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범위(대상규모, 대상기업) 확대[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(비상장 7일) 공시]
 - 대상규모 :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%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 5%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

거래로 확대

- 대상기업 :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사의 범위를 동일인 및 친족이 지분의 30%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서 20%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확대
 - * 대상회사 : 217개→245개(13% 증가)(2011년 기업집단 지정자료 기준)

② 기업집단 현황공시

- 기업집단 내 계열사와의 상품·용역 거래 내역 등을 공시(공시 대상 : 일반현황, 주식 소유 현황, 거래내역 등)하는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범위 확대

- 연간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연 매출액의 10% 이상(상장사의 경우 자본총계 혹은 자본금의 10% 이상 혹은 100억원 이상)인 경우에서 사업기간(상장사는 사업분기, 비상장사는 사업연도) 중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%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

• 기대효과

부당지원의 소지가 있는 계열사간 내부거래 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시장 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

2.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 확대

• 주요 내용

주식 취득 방식을 통한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을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

* 사전에 거래시기, 금액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(증권시장 내 경쟁매매를 통한 거래 등)는 사후신고 유지

• 기대효과

주식취득 방법을 통해 관련시장에 경쟁제한을 야기할 수 있는 국내 및 글로벌 기업들의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심사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

3.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 제한 근거 마련

• 주요 내용

수차례 담합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(리니언시)를 통해 과징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지 않도록 근거규정 마련

• 기대효과

상습 법위반 사업자가 감면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